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가단1286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육삼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12. 13.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6. 9. 접수 제572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 등의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증보험계약의 채무자인 C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2587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2. 7. ‘C은 원고에게 3,916,168원 및 그 중 1,610,067원에 대하여는 2002. 8. 24.부터 2003. 4. 17.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그 중 1,048,637원에 대하여는 2007. 7.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하였고, 위 결정은 2013. 9.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액은 2022. 7. 5. 기준으로 11,119,954원{=6,850,574원(갑 제2호증의1 지연손해금 산출내역) + 4,269,380원(갑 제2호증의2 지연손해금 산출내역)}에 이른다.

다. C의 ‘부(父)’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들인 C, 피고가 있다.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1/2이다.

라. C은 상속인으로서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1. 6. 9. 접수 제57261호로 2020. 12. 13.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등기 및 피고의 상속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통틀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각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적극재산이 사실상 없고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 있는바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C의 동생이자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 등기선례 제9-240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2, C 1/2로 각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인 앞으로 말소되는 모순을 피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은 2003년 이전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 망인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어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대부분은 피고가 마련한 돈이었고, 망인 명의로 E조합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다달이 월급을 받으면 망인에게 주어 망인이 E조합에 직접 가서 입금하는 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왔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남은 대출금을 피고가 중도상환으로 모두 완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C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부분이 고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명의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을 제3, 11, 12,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5. 6. 1.자로 지체장애인 등으로 최초 등록된 장애인이었던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1. 22. 최초 전입하여 그 이후로 계속 거주해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11. 13. 망인이 매도인 F로부터 9,4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2. 14.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000만 원은 기존의 월세 보증금 3,000만 원을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④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직장생활을 하며 꾸준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8. 12. 13. 망인에게 자신의 돈 4,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돈은 다음날 피고가

매도인 F에게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사용된 점, ⑤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 2022. 8. 1.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여금 4,637,139원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을 완납하였는바, 이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완납까지도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C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금액증명 가운데 유일하게 2007년에만 50만 원의 수입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을 제3호증),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은 사실상 0원이었던 점, ⑦ 이와 같이 망인이 지체장애인이었던 사정과 C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었던 3,000만 원의 월세 보증금 마련에도 사실상 피고의 기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여기에 반드시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정도의 피고의 기여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위 분할협의에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를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기여분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근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세종특별자치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세종특별자치시 대 4821.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59.2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4821.9분의 26.4262. 끝.

